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이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50

발의연월일: 2024. 6. 17.

발 의 자:임이자・유용원・이상휘

최수진 · 김형동 · 김종양

김성원 · 김위상 · 구자근

신성범 • 고동진 • 박성민

한지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총 115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, 그중 12명이 사망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유해·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 상황임.

이에 폭염·한파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폭염·한파에 직·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투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제1항제2호 중 "방사선·유해광선·고온·저온·초음파·소음 ·진동·이상기압"을 "방사선·유해광선·고열·한랭·초음파·소음· 진동·이상기압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폭염 · 한파에 장시간 노출되어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9조(보건조치) ① 사업주는	제39조(보건조치) ①		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		
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			
위하여 필요한 조치(이하 "보			
건조치"라 한다)를 하여야 한			
다.		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	
2. <u>방사선·유해광선·고온·</u>	2. <u>방사선·유해광선·고열·</u>		
<u> 저온・초음파・소음・진동・</u>	한랭・초음파・소음・진동・		
<u>이상기압</u> 등에 의한 건강장	<u>이상기압</u>		
해			
3. ~ 6. (생 략)	3. ~ 6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7. 폭염・한파에 장시간 노출		
	되어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		
	는 건강장해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